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- 660호

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 변경 고시

「건축기본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, 한국부동산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0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수탁기관 지정 목적

-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, 한국부동산원을 지정

2. 수탁기관

- 대한건축사협회
 - 대표자: 석 정 훈
 - 주 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
- 한국부동산원
 - 대표자: 손 태 락
 - 주 소: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

3. 수탁기관 지정 기간 : '24.1.1.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

4.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

가. 사업운영

-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기획, 개선계획 수립·시행 등 유지관리 총괄

- 한국건축규정에 따른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토
- 용도지역지구·건축물 용도·층수·면적 등 건축조건에 따른 맞춤형 체크리스트 개발 및 지원
-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연계

나.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

- 한국건축규정 관련 민원 및 콜백 서비스 전담 조직 운영
- 지자체 및 건축사 등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
-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에 대한 사용법 설명
- 건축 관련 법령 제·개정 사항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
- 관련 법령 변경사항에 대해 한국건축규정 및 체크리스트 개선
- 한국건축규정 사전 검토(세움터 이전)를 위한 테스트 시스템 운영

다. 한국건축규정 관련 통계 등 지원

- 한국건축규정 관련 전산자료 제공 및 통계 개발 등 활용 지원
-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지원

라. 시스템(건축행정시스템 내 한국건축규정 기능) 유지보수

- 사용자의 요구 등 시스템 기능 변경, 보완, 개선, 적용, 배포
- DB 자료관리 및 대·내외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사항 반영
- 주전산기 등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